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3. 13) 상정
 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3. 13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 명호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사항 조정과 노인복지시설로의 감면 확대 및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유족,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 단서조항 “다만,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.”를 삭제함.(안 제2조제2항, 제3조제1항)
-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% 경감사항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조정함. (안 제6조)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%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함.(안 제9조제2항)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함
 -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정함(안 제10조, 제16조)
 -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조정함. (안 제12조)
 -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 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조정함.(안 제17조)부천시투자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2분의1이상을 3분의2이상으로 조정함. (안 제4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9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사항 조정과 노인복지시설로의 감면 확대 및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유족,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 단서 조항 “다만,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.”를 삭제함. (안 제2조제2항, 제3조제1항)
-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%경감사항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조정함. (안 제6조)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%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

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함.

(안 제9조 제2항)

○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함.

-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정함. (안 제10조, 제16조)
-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으로 조정함. (안 제12조)
-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조정함.

(안 제17조)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고, 제3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중 "유료노인복지시설"을 "노인복지시설"로 하고, 제9조제2항중 "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%를 경감한다"를 "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"로 한다.

제10조제2항중 "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"을 "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"으로 하고, 제12조제1항중 "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"를 "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"로 한다.

제16조제1항중 "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"를 "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"로 하고, 동조제2항중 "도시계획법

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"를 "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"로 한다.

제17조중 "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"를 "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